

의안번호	제591호
의결 연월일	. . . (제회)

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	박경숙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4년 5월 31일

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경숙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91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4년 5월 일

발 의 자 : 박경숙, 김꽃임, 김국기, 이의영,
이양섭, 이종갑, 임병운

1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에 투자하려는 기업에 대한 지원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운용중인 본 조례의 창업기업·벤처기업 및 서비스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기존 제조업에 편중된 보조금 지원 체계를 개편하고, 투자기업의 자발적인 인구증가 시책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의 정비 (안 제2조)
- 투자유치 위원회 구성 관련 당연직 위원의 현행화 (안 제5조)
- 서비스기업 지원 보조금 한도 확대 (안 제24조)
-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 지원 확대 및 인구증가 유도 기업 인센티브 지원 체계 구축 (안 제27조의2~제30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관계 법령 : 붙임
- 조례안예고 : 2024. 6.
- 협 의 : 투자유치국 투자유치과
- 비용 추 계 :

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“창업기업”이란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.
13. “벤처기업”이란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.

제5조제3항제1호 중 “기획관리실장, 행정국장, 투자유치국장, 문화체육관광국장”을 “경제통상국장, 과학인재국장, 투자유치국장, 바이오식품의약국장”으로 한다.

제24조제2항 중 “50억원”을 “100억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별사업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금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7조의2(이전정착금 지원) ① 도지사는 투자기업의 상시고용인원이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노동자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노동자 1인당 월 50만원 한도에서 최대 3년간 지원할 수 있으며,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28조제2호 중 “장애인기업” 을 “장애인기업 또는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투자사업장에서 하는 주업종이 6대 신성장동력산업에 해당하는” 을 “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인” 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투자기업이 충청북도 저출생 극복 기부 캠페인 참여 등 충청북도 저출생 극복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: 2퍼센트 범위에서 가산

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 각 호의 금액” 을 “100억원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정한” 을 “정한 대상과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.

제35조제1호 중 “「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」 제28조제2항” 을 “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18조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“<u>창업기업</u>”이란 <u>법인등기부등본상 설립일부터 보조금 신청 시까지의 업력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한다.</u></p> <p>3. ~ 12. (생략)</p> <p>13. “<u>6대 신성장동력산업</u>”이란 <u>충청북도가 선정한 산업으로서 바이오, 태양광, 화장품·뷰티, 유기농, 정보통신기술 또는 항공정비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.</u></p> <p>14. · 15. (생략)</p> <p>제5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<u>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u></p> <p>1. <u>기획관리실장, 행정국장, 투자유치국장, 문화체육관광국장 또는 균형건설국장</u></p> <p>2. ~ 5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“<u>창업기업</u>”이란 「<u>중소기업창업 지원법</u>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.</p> <p>3. ~ 12. (현행과 같음)</p> <p>13. “<u>벤처기업</u>”이란 「<u>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</u>」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.</p> <p>14. · 15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<u>경제통상국장, 과학인재국장, 투자유치국장, 바이오식품의약국장</u> -----</p> <p>2. ~ 5. (현행과 같음)</p>

④ (생략)

제24조(서비스업 지원) ① (생략)

② 서비스업에 대한 보조금은 부지매입비, 건축비, 기반시설 설치비 및 장비설치비 등에 대하여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제28조(지원비율 특례) 도지사는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투자기업을 지원할 경

④ (현행과 같음)

제24조(서비스업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100억원 -----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별사업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금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제27조의2(이전정착금 지원) ①

도지사는 투자기업의 상시고용 인원이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노동자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노동자 1인당 월 50만원 한도에서 최대 3년간 지원할 수 있으며,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28조(지원비율 특례) -----

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1. (생략)
2. 투자기업이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인 경우: 2퍼센트 범위에서 가산
3. 투자기업이 투자사업장에서 하는 주업종이 6대 신성장동력산업에 해당하는 경우: 3퍼센트 범위에서 가산

<신설>

제29조(지원한도)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되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

1. 제조업: 100억원
2. 서비스업: 50억원

제30조(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) ① 도지사는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----- 장애인기업 또는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-----

3. -----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인 -----

4. 투자기업이 충청북도 저출생 극복 기부 캠페인 참여 등 충청북도 저출생 극복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: 2퍼센트 범위에서 가산

제29조(지원한도) -----

----- 100억원-----
-----.

<삭제>

<삭제>

제30조(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) ① -----

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
범위를 초과하여 특별지원 할
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②·③ (생략)

④ 도지사는 제1항의 투자기업
상시고용인원이 도내로 이전하
는 경우 노동자 정착을 위하여
노동자 1인당 월 10만원 한도에
서 최대 3년간 지원할 수 있다.

제35조(지원 등의 취소) 도지사는
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
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
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
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 및 교
부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
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
있으며,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
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

1. 「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
례」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
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2. ~ 5. (생략)

----- 정한 대상과 -----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제35조(지원 등의 취소) -----

-----.

1.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
조례」 제18조 -----

2. ~ 5. (현행과 같음)

관련법령 발췌

【지방자치법】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~ 3. 생략

4.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·관리에 관한 사무
가. ~ 너. 생략

더.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

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충청북도에 투자하려는 창업기업, 벤처기업, 서비스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보조금 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투자기업의 자발적인 인구 증가 시책 참여를 유도

2. 비용 발생 요인

- 노동자 1인당 월 50만원 한도(최대 3년간, 총 10억원 이내)의 이전정착금 지원
- 가족친화인증기업 또는 저출생 극복 참여 기업이 투자 시 대해 2퍼센트 범위 내, 투자보조금 지원 가산
-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투자 시 10퍼센트 범위 내 투자보조금 지원 가산

3. 관련조문

- **안 제27조의2(이전정착금 지원)**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노동자 1인당 월 50만원 한도에서 최대 3년간 지원할 수 있으며,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.
- **안 제28조(지원비율 특례)** 2. 투자기업이 여성기업, 장애인기업 또는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인 경우 : 2퍼센트 범위에서 가산
- **안 제28조(지원비율 특례)** 3. 투자기업이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인 경우 1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
- **안 제28조(지원비율 특례)** 4. 투자기업이 충청북도 저출생 극복 기부 캠페인 참여 등 충청북도 저출생 극복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: 2퍼센트 범위에서 가산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이전정착금 연간 1개사(30명 이전, 연 1억8천만원 소요) 정도 지원
- 가족친화인증 투자기업 또는 저출생 극복 참여 투자기업 연간 2개사 정도 지원(기업당 10억 지원 시, 연간 총 4천만원 소요)
- 창업 또는 벤처 투자기업 연간 1개사 정도 지원(기업당 10억 지원 시, 연간 총 2천만원 소요)

나. 추계 결과 : '24년부터 향후 5년간 960,000천원 정도 소요되나 예산 내 충당 가능하
여 별도로 추가비용 발생되지 않음

다. 재원조달방안 : 도비, 시군비

- 기존 도내투자기업보조금 지원 사업 내 지원 기업 비율 조정을 통해 예산 내 충당(2024년도 예산 2,568,500천원)
- 추가 예산 반영 없음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24년)	2차년도 (2025년)	3차년도 (2026년)	4차년도 (2027년)	5차년도 (2028년)	계
세 출	2,568,500	2,568,500	2,568,500	2,568,500	2,568,500	12,842,500
도내 투자기업 보조금	2,568,500	2,568,500	2,568,500	2,568,500	2,568,500	12,842,500

6. 작성자 : 투자유치국 투자유치과장 조병철